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험한 작업의 2인이상 1조 의무화 〉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4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험한 작업의 2인이상 1조 의무화	3

I. 제안경위

2025년 3월 28일 강득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비나 물질, 작업방법, 작업장소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다가 긴급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2인 1조 근무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등).

Ⅲ. 검토의견

1. 위험한 작업의 2인이상 1조 의무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의 안전조치에 추락·질식 등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2인 이상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8조(안전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인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u>

④ (생 략)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	야 한다. 1. 승강기, 크레인 등 근로자 및 시설물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2. 수중, 지하 및 갯도 등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3. 선로나 삭도 등 궤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작업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탱크 및 특정설비 등 고압가스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작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67조(벌칙) ① ----- -제4항까지----- ----- ----- ----- ----- ----- -----
---	---

_____.

② (현행과 같음)

제168조(벌칙) -----

-----.[illegible]

2. (현행과 같음)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
- 제4항까지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2022년 신당역 스톱킹 살인사건, 2022년 SPL 평택공장 반죽 배합기 끼임 사망사고, 2023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추락사고,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까지 대중적으로 알려진 굵직한 산업재해는 대부분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다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 없이, 스쿠버 잠수작업에 한하여 2명을 1조로 하여 작업하도록 하거

나,1) 특정 작업에 감시인을 배치하도록 하고,2) 특정 기계·차량 운행 시 유도자를 배치하도록3)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과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4) 「공공

-
- 1)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스쿠버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을 하는 곳에 감시인을 두어 잠수작업자의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 2)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톱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 3)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0조(접촉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4) 제14조(안전조치) ③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만으로는⁵⁾ 이행의 강제력이 부족하고 내용의 공백이 있는 등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험한 작업은 2인 이상이 한 조로 편성되어 수행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시되고 있음.⁶⁾

‘2인 1조’ 작업은 원래 수영이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을 할 때 복수의 사람이 하나의 구성단위가 되어 서로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바로 잡도록 하고 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버디시스템(Buddy system)’이 작업에 적용된 개념으로 산업재해 위험을 낮추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공간에 2명 이상의 작업자가 투입되어 상호 모니터링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별도 감시인이거나 관리자를 작업 공간에 배치하여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지적·교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가장 먼저 응급조치를 하면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하위법령 등에서 불완전하게 규정된 2인 1조 작업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과 함께 필요시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규정함으로써 위험한 작업에 노출된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5) 기획재정부 지침(일부개정 2024. 9. 6.)

6) 앞서 언급된 서대문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추락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한 작업 시 2인 이상 작업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1대에서 발의된 바 있음(의안번호 제212388호)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긴급한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다만, 법률에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한편, ‘위험작업’의 범위는 감시인·감시자, 유도자 배치, 2인 이상 1조 작업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토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의 취지는 감시인 배치 등 현행 법령상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개정안 통과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감시인, 작업지휘자를 배치했음에도 추가로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중복 규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개정안에서 규정한 위험 작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작업의 위험성과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인력 및 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2인 1조 작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 인건비와 인력 확보 부담이 불가피하여 법 준수보다는 사법리스크를 선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